

#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79호 2023. 5. 30.(화)

## 규 칙

고성군 규칙 제1258호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3-898호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고성군 공고 제2023-908호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예고 ..... 17

고성군 공고 제2023-926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고성군 공고 제2023-932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30

##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3-91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 35

## 공 고

고성군 공고 고성군 공고 제2023-900호 고성군 금고지정 계획 공고 ..... 38

회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5월 30일

고성군규칙 제1258호

###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2023. 5. 30.)

##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의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금융기관별 점수		비고
합 계		<b>100</b>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b>27</b>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상태 평가	(8)			
	- 국외 평가기관	(4)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6)			
	- 고정이하 여신비율	(6)			
	- 자기자본 이익율	(5)			
- 대손충당금 적립율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b>20</b>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주민이용 편의성	소 계	<b>21</b>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b>25</b>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계획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소 계	<b>7</b>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			

20 년 월 일

심사자 :

위원 (인)

고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2023. 5. 30.)

##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결과 집계표

금융기관명 :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특점 합계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b>합 계</b>		<b>100</b>										
<b>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b>	<b>소 계</b>	<b>27</b>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상태 평가	(8)										
	- 국외 평가기관	(4)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6)										
	- 고정이하 여신비율	(6)										
	- 자기자본 이익율	(5)										
- 대손충당금 적립율	(2)											
<b>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b>	<b>소 계</b>	<b>20</b>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6)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b>3. 주민이용 편의성</b>	<b>소 계</b>	<b>21</b>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b>4. 금고업무 관리능력</b>	<b>소 계</b>	<b>25</b>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 능력	(8)										
	라. OCR센터 운영계획	(3)										
<b>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b>	<b>소 계</b>	<b>7</b>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										

20    년    월    일

고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고성군수 귀하

고성군공고 제2023-898호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군수 읍·면소통간담회(‘23년 2월) 시 하일면 주민의 분반요청(동화리 동화마을)에 따라 검토한 결과 주민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분반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반 증설 및 반 현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제도 개편사항 반영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성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별표) 신설

- 622개 반(기존)→ 623개 반(개정): 1개 반 증설(하일면 동화리 동화마을)

나. 상위법 준용 법률 조항 수정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 제7조제6항

다. 행정제도 개편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제3조, 제7조

1) 가구 → 세대

2) 공지사항의 주지 → 공지사항 전달

3) 대행정 여망사항 →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

4) 주민자치회 → 반상회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1) 주소: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 2) 전화번호: 055-670-2104, 팩스번호: 055-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 행정담당(☎055-670-21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반설치)”를 “(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하부조직으로 “반””을 “하부조직으로 반”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반의 설치기준)”을 “(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도시지역은 15세대 이상 25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여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반명칭 및 관할구역)”을 “(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반의”를 “반”으로,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공고한다”를 “공고하며, 별표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보수등”을 “보수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반상회)”를 “(반상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본다.

■ 고성군 반 설치 조례 [별표]

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총계			623				
고성읍			155				
고성읍	성내리	서내	7	1반~7반	일원		
		남내	6	1반~6반	〃		
		동내	5	1반~5반	〃		
	서외리	서외1	10	1반~10반	〃		
		서외2	5	1반~5반	〃		
	수남리	수외	6	1반~6반	〃		
		남외	6	1반~6반	〃		
		구암	2	1반~2반	〃		
		남포	4	1반~4반	〃		
	동외리	동외	8	1반~8반	〃		
		남산1	5	1반~5반	〃		
		남산2	6	1반~6반	〃		
		정동1	6	1반~6반	〃		
		정동2	2	1반~2반	〃		
		송학리	송학	8	1반~8반	〃	
			무학	8	1반~8반	〃	
		기월리	기월	4	1반~4반	〃	
	신기		2	1반~2반	〃		
	교사리	교동	4	1반~4반	〃		
		사동	2	1반~2반	〃		
	대독리	대안	1	1반	〃		
		독실	2	1반~2반	〃		
	이당리	면전	3	1반~3반	〃		
		이곡	2	1반~2반	〃		
	무량리	무량	2	1반~2반	〃		
	덕선리	양덕	1	1반	〃		
		선동	2	1반~2반	〃		
	대평리	대평	2	1반~2반	〃		
		울촌	1	1반	〃		
	우산리	내우산	2	1반~2반	〃		
		외우산	3	1반~3반	〃		
		상촌	2	1반~2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고성읍	죽계리	죽동	4	1반~4반	일원	
		장계	4	1반~4반	〃	
		평계	1	1반	〃	
	울대리	울대	4	1반~4반	〃	
	월평리	매수	3	1반~3반	〃	
		홍류	3	1반~3반	〃	
		거운	1	1반	〃	
	신월리	신부	4	1반~4반	〃	
		곡용	2	1반~2반	〃	
<b>삼산면</b>			<b>33</b>			
삼산면	병산리	병산	3	1반~3반	일원	
	두포리	장지	3	1반~3반	〃	
		두모	2	1반~2반	〃	
		포교	2	1반~2반	〃	
		덕산	2	1반~2반	〃	
	미룡리	대포	2	1반~2반	〃	
		용호	3	1반~3반	〃	
		미동	2	1반~2반	〃	
	삼봉리	상촌	3	1반~3반	〃	
		해명	2	1반~2반	〃	
	장치리	중촌	2	1반~2반	〃	
		장백	2	1반~2반	〃	
	판곡리	판곡	5	1반~5반	〃	
	<b>하일면</b>			<b>37</b>		
하일면	수양리	수양	4	1반~4반	일원	
	용태리	용태	3	1반~3반	〃	
		가룡	1	1반	〃	
	학림리	임포	3	1반~3반	〃	
		도동	1	1반	〃	
		학동	2	1반~2반	〃	
		금단	3	1반~3반	〃	
	송천리	송천1	2	1반~2반	〃	
		자란	1	1반	〃	
		송천2	2	1반~2반	〃	
	오방리	오방	4	1반~4반	〃	
	춘암리	춘암	3	1반~3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하일면	춘암리	용암포	2	1반~2반	일원		
		맥전포	1	1반	〃		
	동화리	동화	5	1반~5반	〃		
하이면			35				
하이면	덕호리	두수	2	1반~2반	일원		
		부평	1	1반	〃		
		신덕	4	1반~4반	〃		
		군호	3	1반~3반	〃		
	덕명리	제천	1	1반	〃		
		덕명	4	1반~4반	〃		
	월흥리	월흥	4	1반~4반	〃		
		입암	1	1반	〃		
		신흥	1	1반	〃		
		정곡	1	1반	〃		
	사곡리	사곡	2	1반~2반	〃		
	석지리	남산	1	1반	〃		
		음촌	1	1반	〃		
		양촌	2	1반~2반	〃		
		신촌	1	1반	〃		
	와룡리	와룡	2	1반~2반	〃		
	봉현리	봉현	3	1반~3반	〃		
	봉원리	외원	1	1반	〃		
	상리면			28			
	상리면	고봉리	고봉	2	1반~2반	일원	
비곡			1	1반	〃		
신촌리		신촌	3	1반~3반	〃		
오산리		오산	2	1반~2반	〃		
		중촌	1	1반	〃		
		가동	1	1반	〃		
척변정리		척정	3	1반~3반	〃		
		조동	1	1반	〃		
		평촌	1	1반	〃		
동산리		동산	2	1반~2반	〃		
망림리		망림	1	1반	〃		
		구미	2	1반~2반	〃		
무선리		무선	1	1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상리면	무선리	선동	2	1반~2반	일원	
	자은리	자은	1	1반	〃	
	부포리	부포	2	1반~2반	〃	
		내부포	2	1반~2반	〃	
대가면			40			
대가면	송계리	송계	3	1반~3반	일원	
		장전	2	1반~2반	〃	
	신전리	신전	3	1반~3반	〃	
	갈천리	외갈	1	1반	〃	
		내갈	2	1반~2반	〃	
		종생	2	1반~2반	〃	
	양화리	양화	2	1반~2반	〃	
	연지리	지동	3	1반~3반	〃	
		평동	2	1반~2반	〃	
	유흥리	유흥	2	1반~2반	〃	
		삼계	2	1반~2반	〃	
	암전리	암전	4	1반~4반	〃	
	금산리	월촌	1	1반	〃	
		세동	2	1반~2반	〃	
		신화	1	1반	〃	
		가동	1	1반	〃	
	척정리	화암	2	1반~2반	〃	
		척곡	2	1반~2반	〃	
		관동	3	1반~3반	〃	
	영현면			22		
영현면	추계리	추계	1	1반	일원	
	봉발리	봉발1	1	1반	〃	
		봉발2	1	1반	〃	
		금능	1	1반	〃	
	대법리	대촌	2	1반~2반	〃	
		법촌	2	1반~2반	〃	
	영부리	영부	2	1반~2반	〃	
		영동	1	1반	〃	
	봉림리	봉림	2	1반~2반	〃	
	침점리	침점1	2	1반~2반	〃	
침점2		1	1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영현면	신분리	평촌	1	1반	일원		
		매촌	1	1반	〃		
		신촌	1	1반	〃		
	연화리	연화1	2	1반~2반	〃		
		연화2	1	1반	〃		
영오면			28				
영오면	오서리	오서	4	1반~4반	일원		
	오동리	오동	3	1반~3반	〃		
	영대리	옥동	1	1반	〃		
		영대	4	1반~4반	〃		
	영산리	신흥	1	1반	〃		
		성산	2	1반~2반	〃		
		낙안	1	1반	〃		
	성곡리	생곡	1	1반	〃		
		금산	1	1반	〃		
	연당리	범계	1	1반	〃		
		연촌	1	1반	〃		
		분양	1	1반	〃		
		악양	1	1반	〃		
	양산리	양기	3	1반~3반	〃		
		양월	3	1반~3반	〃		
	개천면			18			
	개천리	명성리	상명	1	1반	일원	
하명			2	1반~2반	〃		
예성리		덕성	1	1반	〃		
		구례	1	1반	〃		
북평리		북평	1	1반	〃		
용안리		용안	2	1반~2반	〃		
봉치리		봉치	2	1반~2반	〃		
청광리		청동	1	1반	〃		
		청남	1	1반	〃		
나선리		나동	1	1반	〃		
가천리		가천	2	1반~2반	〃		
좌연리		좌연	2	1반~2반	〃		
		좌이	1	1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구만면			19			
구만면	효락리	낙동	3	1반~3반	일원	
		효대	1	1반	〃	
	주평리	주평	2	1반~2반	〃	
	화림리	화촌	1	1반	〃	
		당산	2	1반~2반	〃	
	저연리	연동	2	1반~2반	〃	
		저동	1	1반	〃	
	용와리	와룡	2	1반~2반	〃	
		용당	1	1반	〃	
	광덕리	광암	2	1반~2반	〃	
		중암	1	1반	〃	
덕암		1	1반	〃		
회화면			52			
회화면	배둔리	관인	6	1반~6반	일원	
		가례	5	1반~5반	〃	
		양지	5	1반~5반	〃	
		안의	5	1반~5반	〃	
	당항리	당항	4	1반~4반	〃	
	봉동리	자소	5	1반~5반	〃	
		금봉촌	2	1반~2반	〃	
		동촌	3	1반~3반	〃	
	어신리	석전	1	1반	〃	
		산북	3	1반~3반	〃	
		어선	3	1반~3반	〃	
	삼덕리	월계	4	1반~4반	〃	
		남진	1	1반	〃	
		신천	2	1반~2반	〃	
		치명	1	1반	〃	
	녹명리	녹명	2	1반~2반	〃	
마암면			41			
마암면	두호리	두호	4	1반~4반	일원	
	삼락리	곤기	3	1반~3반	〃	
		평부	4	1반~4반	〃	
	보전리	보대	2	1반~2반	〃	
		전포	2	1반~2반	〃	
		동정	2	1반~2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마암면	화산리	원진	2	1반~2반	일원	
		법진	2	1반~2반	〃	
		화산	4	1반~4반	〃	
	도전리	명송	1	1반	〃	
		도전	2	1반~2반	〃	
		용전	1	1반	〃	
		초선	2	1반~2반	〃	
	장산리	장산	3	1반~3반	〃	
		성전	2	1반~2반	〃	
	신리	신리	2	1반~2반	〃	
석마리	석마	3	1반~3반	〃		
<b>동해면</b>			<b>52</b>			
동해면	장기리	용흥	2	1반~2반	일원	
		장기	3	1반~3반	〃	
	양촌리	검포	3	1반~3반	〃	
		덕곡	2	1반~2반	〃	
		법동	3	1반~3반	〃	
	외산리	대천	2	1반~2반	〃	
		좌부천	2	1반~2반	〃	
	내산리	내산	2	1반~2반	〃	
		전도	2	1반~2반	〃	
	용정리	매정	3	1반~3반	〃	
		가룡	3	1반~3반	〃	
	장좌리	우두포	1	1반	〃	
		상장	3	1반~3반	〃	
		하장	2	1반~2반	〃	
		구학포	2	1반~2반	〃	
	봉암리	장항	2	1반~2반	〃	
		입암	3	1반~3반	〃	
		동림	2	1반~2반	〃	
	외곡리	정남	2	1반~2반	〃	
		정북	2	1반~2반	〃	
내곡리	남촌	3	1반~3반	〃		
	북촌	3	1반~3반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수	반명	구역	비고
거류면			63			
거류면	당동리	당동	4	1반~4반	일원	
		신당	4	1반~4반	〃	
		봉곡	3	1반~3반	〃	
	신용리	용동	3	1반~3반	〃	
		마동	4	1반~4반	〃	
		상원	2	1반~2반	〃	
		하원	3	1반~3반	〃	
	화당리	화당	2	1반~2반	〃	
	거산리	거산	3	1반~3반	〃	
	가려리	덕촌	3	1반~3반	〃	
		가동	3	1반~3반	〃	
	송산리	송정	2	1반~2반	〃	
		구현	2	1반~2반	〃	
		도산촌	2	1반~2반	〃	
	은월리	월치	3	1반~3반	〃	
		정촌	2	1반~2반	〃	
		신은	3	1반~3반	〃	
	용산리	용산	6	1반~6반	〃	
	감서리	봉림	3	1반~3반	〃	
		감동	2	1반~2반	〃	
용운		2	1반~2반	〃		
산성		2	1반~2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3-908호

**고성군 주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주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시·주민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및 행안부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필요 내용 권고안에 따라 미비 조항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 보험기관 정의에 공제회 추가(안 제2조)
- 나. 가입대상 명확화(안 제3조)
- 다.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내용 일부개정(안 제4조)
- 라. 보험료 납입 주체 명확화(안 제5조)
- 마. 보험료 청구과정 내 행정적 지원 추가(안 제7조)
- 바. 보험기관 보험료 지급 현황 통보 의무 추가(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 2) 전화번호: 055-670-2504, 팩스번호: 055-670-25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자(☎055-670-25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주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주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를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로, “보험을”을 “보험 또는 공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군수와”를 “군과”로, “보험 회사를”을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의 제목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민들”을 “군민”으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①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험료는 고성군의 예산의 범위에서”를 “군수는 보험료를”로, “납입”을 “납입하여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보험금 신청)”을 “(보험금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상속인”을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으로, “신청”을 “청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 된다”를 “제외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험가입”을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청을”을 “청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

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 -----.</p>
<p>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u>고성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u></p>	<p>1. ----- ----- <u>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 보험 또는 공제를</u> -----.</p>
<p>2. “보험기관”이란 <u>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u></p>	<p>2. ----- <u>군과 -----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을 -----</u> -----.</p>
<p>3.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가입대상) <u>고성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u></p>	<p>제3조(가입대상) <u>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에 따라 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장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①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  
액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  
약한 보험기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  
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  
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  
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② -----  
-----  
-----  
--- 군민-----  
---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고성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기관에 직접 납입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군수는  
보험료를 -----  
----- 납입하여야 -----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  
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  
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 1. 2. (생 략)
-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  
우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보험금 청구) ① -----  
-----  
-----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 청구-----  
-----.

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  
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  
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  
-----  
----- 제외  
된다.

- 1. 2. (현행과 같음)
- 3. -----  
--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  
급-----  
--

제9조(보험금 지급) ① -----  
----- 청구를 -----  
-----  
-----.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

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3-926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경제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

- 1) 주소: (52943)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 2) 전화번호: 055-670-2243, 팩스번호: 055-670-2309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붙임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u>&lt;삭 제&gt;</u></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공고 제2023-932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제5조 제목을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에서 “(지역계획의 수립 등)” 으로 변경

나. 지역계획의 명칭 정비(안 제5조제3항)

다.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2) 전화번호: 055-670-2565, 팩스번호: 055-670-25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도시계획담당 [전화: (055)670-256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을 “(지역계획의 수립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개정 규정이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역계획의 경과조치) 종전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p> <p>⑤·⑥ (생략)</p>	<p>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 -----.</p> <p>④ ----- ----- -----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p> <p>⑤·⑥ (현행과 같음)</p>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고시 제2023-91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24.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마암면 보전리 150	마암면 당항만로 405-24	2023.05.24.	건물번호부여신청	회화면 당항만(해안이름)의 이름을 활용하여 부여	
2	고성읍 신월리 915	고성읍 신월5길 35-8	2023.05.2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고성읍 신월리)을 이용하는 다섯번째 도로	
3	대가면 신전리 296-1	대가면 연화산1로 107-221	2023.05.24.	건물번호부여신청	연화산도립공원으로 연결되는 종단 길임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4	고성읍 서외리 237-7	고성읍 성내로76번길 57-5	2023.05.24.	건물번호부여신청	성내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 760m지점에서 분기되는 도로	

고성군 공고 제2023-900호

고성군 금고지정 계획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및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금고지정 절차)에 따라 고성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4.

고 성 군 수

- 1. 지정방법: 경쟁방법
- 2. 약정기간: 4년 (2024. 1. 1. ~ 2027. 12. 31.)
- 3. 금고의 수: 2개 [주금고(제1금고), 부금고(제2금고)]
- 4. 금고별 취급회계

가. 주금고(제1금고)

- 일반회계(1)
- 특별회계(10):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 사회복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고성군청사건립특별회계,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 기금(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주),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신설예정)

나. 부금고(제2금고)

- 특별회계(2): 기타특별회계(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기금(4):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금고(제1금고), 부금고(제2금고)가 분산 관리

5. 신청자격

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융기관

나.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에 따라 고성군 관내에 1년 이상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금고의 주요업무

- 가.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나.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다. 현금과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라. 지출원의 지출대행 약정 관련 업무
- 마.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 업무
- 바.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7. 신청절차

가. 관계서류 열람 및 신청서 교부

- 일 시: 2023. 5. 24(수)~ 2023. 6. 7.(수)
- 장 소: 고성군청 재무과
- 대 상: 신청자격이 있는 금융기관
- 군홈페이지([www.goseong.go.kr](http://www.goseong.go.kr)/정보공개/재정정보)에서 예산서, 결산서 등 확인 가능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2023. 6. 8.(목) ~ 6. 9.(금) 까지  
※근무시간[09:00 ~ 18:00까지]내 접수 분에 한함.
- 장 소: 고성군청 재무과 세입담당
- 제출서류: 군 금고 지정신청서 및 신청안내서 상의 지정서류 일체
- 제출부수: 12부(원본1부, 사본11부) ※요약서 12부 별도 제출
- 제출방법: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함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5조제2항의 별표와 같음  
[붙임1(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2(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9. 평가방법

- 가.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고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제출된 제안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 평가함.
- 나. 평가결과 제1위 금융기관을 주금고(제1금고)로, 제2위 금융기관을 부금고(제2금고)로 지정함.

## 10. 기타사항

- 가. 제안서는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나. 금회 지정 금고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과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고성군에 배상하여야 한다.
- 다.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니 작성 및 제출 시 주의를 요함.
- 라. 금고 선정을 위한 기타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고성군 금고지정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마. 그 밖의 금고지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055-670-2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고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2항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 평가기관 -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 이익율(수익성) - 대손충당금 적립율(안정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9 (6) (6) (5) (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무인점포수, 관내 ATM기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계획	(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 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붙임2]

**고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세 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비 고
계		100점						
1-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국외 평가기관 (4)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2.4	2.8	3.2	3.6	4.0	
	국내 평가기관 (4)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2.4	2.8	3.2	3.6	4.0	
1-나 주요 경영 지표현황 (19)	총자본비율 (6)	기준	4%미만	4%이상~ 6%미만	6%이상~ 8%미만	8%이상		
		배점	4.2	4.8	5.4	6.0		
	고정이하 여신비율 (6)	기준	7.0%초과	4.0%초과~ 7.0%이하	2.5%초과~ 4.0%이하	2.5%이하		
		배점	4.2	4.8	5.4	6.0		
	자기자본 이익율(5)	기준	7%미만	7%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배점	3.0	3.5	4.0	4.5	5.0	
	대손충당금 적립율(2)	기준	34%미만	34%이상~ 45%미만	45%이상~ 65%미만	65%이상		
		배점	1.4	1.6	1.8	2.0		
2-가. 정기예금예치 금리(7)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5.6	5.95	6.3	6.65	7.0		
2-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6)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4.8	5.1	5.4	5.7	6.0		
2-다. 군에 대한 대출 금리(4)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3.2	3.4	3.6	3.8	4.0		
2-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2.4	2.55	2.7	2.85	3.0		

세 부 항 목		세 부 평 가 기 준					비 고	
3-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설치대수(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4.8	5.6	6.4	7.2	8.0		
3-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3.6	4.2	4.8	5.4	6.0		
3-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4.2	4.9	5.6	6.3	7.0		
4-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3.6	4.2	4.8	5.4	6		
4-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4.8	5.6	6.4	7.2	8.0		
4-다. 전산 시스템보안 관리등전산 처리 능력(8)	전산보안 관리(4) 전산처리 능력(4)	기준	국내·외 인증서 미보유	국내·외 인증서 1개만 보유	국내·외 인증서 보유			
		배점	3.2	3.6	4.0			
4-라. OCR센터 운영 계획(3)	전산처리 능력(4)	기준	미흡	보통	우수			
		배점	3.2	3.6	4.0			
5-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	전산처리 능력(4)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4	4.25	4.5	4.75	5	
5-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	전산처리 능력(4)	기준	5순위	4순위	3순위	2순위	1순위	
		배점	1.6	1.7	1.8	1.9	2.0	

# 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서

고 성 군

[별지 제1호서식]

### 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서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남/여)
소 재 지	본 점		전 화
	고성지역 사 무 소		전 화

고성군 금고지정 신청요령의 제반사항을 이행 할 것을 수락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고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 금고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인

고성군수 귀하

# 각 서

1. 고성군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 할 것을 수락 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 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을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 되었을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향후 금고지정 제안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 하겠습니다.
2. 금고지정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 를 하지 않겠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   ○○○(인)

고성군수 귀하

#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농협(은행)의 ○ ○ ○ 지점장 ○ ○ ○(성명기재)  
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붙 임: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20    년    월    일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   ○○○(인)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 금고지정 신청 제안서

○○ 금 용 기 관 의 장 (인)

## 제1장 법인 현황

### 1. 법인 명칭

○ 법인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부기함(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첨부)

### 2. 법인 개요

- 연혁
- 주사무소 소재지
- 자본금 현황(최다 출자자 순)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제2장 신청목적과 운영계획

1. 신청 법인의 금고유치 신청 목적, 취지, 타당성 등을 간략히 기재
2. 금고 지정 시 금고운영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

## 제3장 평가자료 작성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1) 국외 평가기관

(기준일: 2022.12.31)

무디스(Moody's)		에스앤피(S&P)		피치(Fitch))		비고
평가일	장기신용등급	평가일	장기신용등급	평가일	장기신용등급	

(2) 국내 평가기관

(기준일: 2022.12.31)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비 고
평가일	신용등급	평가일	신용등급	평가일	신용등급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항 목	평균(A+B+C)/3	2022년도말(A)	2021년도말(B)	2020년도말(C)
총 자 본 비 율	%	%	%	%
고정이하 여신비율	%	%	%	%
자기 자본 이익율	%	%	%	%
대손충당금 적립율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기준은 각 회계연도 결산자료이며, 경영공시된 자료를 기재함.

- 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할 것(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② 항목별에 대한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 경영공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첨부(회계법인의 검사 확인필 및 공시자료 제출 요함)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단위 : %)

예치기간	기준금리	가산금리	제안금리	비 고
1월 이상 ~ 3월 미만				
3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 년 이 상				
2 년 이 상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기준금리는 제안서 제출 전월말 기준
- ② 제안금리는 금고 유치 시 적용금리를 말하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단위 : %)

기준금리	가산금리	제안금리	비고

※ 작성 시 주의사항 : 공금예금은 자금의 일상 예치자금을 말함

- ① 기준금리는 제안서 제출 전월말 기준
- ② 시중 금융기관 보통예금 금리표 첨부 및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단위 :

%)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제안금리	비 고
1년이내 일시 차입금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기준금리는 제안서 제출 전월말 기준
- ② 차입 시 필요한 각종 수수료 등 비용은 면제이며, 중도상환이 가능해야함
- ③ 이율 조정은 일시차입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결정
- ④ 제안금리는 금고 유치 시 적용금리를 말하며 소수 둘째자리까지 작성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단위 : %)

구 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제안금리	비고(예치기간)
10억원 이상				7일 이상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기준금리는 제안서 제출 전월말 기준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기준일: 2022.12.31)

관내 점포 수	비 고

※ 본점, 지점, 영업점, 출장소, 회원조합 점포 포함(무인점포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별	수납건수	수 납 액	비 고
계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회계 포함
2022년			
2021년			
2020년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내 용	비 고
실 적		
계 획		

- (1) 3년간(2020~2022년)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실적(증빙서류 첨부)
- (2)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 계획(세부추진계획서 첨부)
  -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 노동쟁의, 파업 등 금고업무 중단 사태·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대책
  - 금고업무 관련 송금, 비용 면제 등 부가서비스 추진 계획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기준일: 2022.12.31.)

구 분	내 용	비 고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		
연계시스템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지방세입금 조회·수납서비스 추진 대책		
자금관리 전산시스템의 발전방안		

- 지방세입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 등과의 연계시스템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 금융결제원 연계 지방세입금 은행창구 조회·수납서비스 추진 대책
-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 전산시스템의 발전방안 제시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단위: 금고수, 2022. 12. 31기준)

구 분	합 계	단수금고	복 수 금 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합 계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 단체	소 계				
	경남도내				
	타 시 도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단위: 보유수, 2022. 12. 31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전산보안 관리 (국내외 인증서 보유현황)	국내인증서( ), 국외인증서( )	보유여부
전산처리능력		

- (1) 국내·외 보안인정기관의 전산보안 인증 결과
  - ※ 보안인증기관의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할 것
- (2) 전산보안시스템 운영방안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보안시스템(H/W, S/W) 도입 및 운영 방안
  - 해킹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및 운영 방안
  - 군금고 전산운영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지원 방안 등

라. OCR센터 운영 계획

(기준일: 2022.12.31.)

구 분	내 용	비 고
OCR센터 운영	미계획( ), 구축계획( ), 구축완료( )	

- 위치, 규모, 전문인력 및 인원, 교육훈련, 시설장비(H/W, S/W 성능 및 설계구조, 이미지시스템 등) 설치 및 운영계획
- 영수필통지서 분류, 대사, 집계, 자금이체 및 보고서 (전자고지 납부 포함)에 관한 사항 등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지원건수	지원금액	비 고
계			
2023년 1월~4월			
2022년			
2021년			
2020년			

※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연도별, 분야별, 지원내용과 수혜자, 지원금액을 별도 작성
- ② 연도별 구분 작성하되 증빙서류 첨부

나. 고성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비고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사업명						

6. 기타사항

금고지정 신청서류 작성 방법

1] 주의사항

- 작성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신청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 정확히 작성하고 항목의 순서와 취지에 따라 간단,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작성방법

- 신청 서류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순서별로 작성하고, 용지규격은 A4(A4 이외의 크기는 A4로 접음)로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안에 표기하고, 서식은 서식대로 작성하고 주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식의 하단에 기재하며 첨부자료는 색인표를 부착하여 항목 순서대로 편철하여 부속자료로 제출함.
- 증빙자료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고 대조필인은 사용인감을 날인
- 금고지정 신청서는 공문으로 제출하고 증빙서류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는 표지를 붙이고 반드시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백만원으로 표기함.
- 제안 서류와 신뢰성 입증을 위하여 각서 및 제출된 신청서 봉인 시 사용할 인감확인서를 신청서 제출 시 공문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